

개별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5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회사 및 위탁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일임매매약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임매매거래의 수탁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탁자로부터 예약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제5조 임의매매의 금지 ①항 삭제 <u>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약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용어의 변경
제11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거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내용 등(이하 “매매성립내용”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매매성립내용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위탁자 요구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한다.	제11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	-조문 수정

제12조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 및 월말 잔액.잔량현황을 익월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회사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하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3. 이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편발송한 월간 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위탁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하는 경우 4.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	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과생상품의 미결제 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으로 거래하는 경우	-조문수정
---	--	--------------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위탁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5. 위탁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6. 매매 기타 거래내용을 위탁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통지시마다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비치한다.

제14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월간 위탁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주권

가. 상장주권 : 직전 영업일 종가

나. 비상장주권 : 액면가액

2. 수익증권 : 통합일 현재의 공시 기준가격 × 좌수

② 회사는 위탁자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② 좌동

-용어의변경

제21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좌동 <u>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u>	<신설>
제22조 분쟁조정 위탁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u>한국증권업협회</u>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u>한국금융투자협회</u>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